

#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규정

□ 제정 : 1997. 3. 1.

## 제1장 총 칙

제1장(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대학교 부설 산학연컨소시엄센터 (The Center for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이하 “본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장(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직무) 본 센터는 중소기업 지원조직으로서 대학의 연구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이용하여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 즉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중앙정부 부서와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테크노파크 사업 등에 관련된 업무와 중소기업관련 기술용역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본 센터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과제 도출 및 관련교수 선정
2. 기술지도, 기술이전, 연수 및 교육 훈련사업 및 상담, 자문
3. 기술이외의 리팩토리, 품질, 경영, 세무, 회계, 무역 등의 상담, 자문, 교육지원
4. 컨소시엄관련 각종 홍보물, 기본 및 세부 사업 계획서, 운영실적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등 책자 발간과 센터 홈페이지 운영
5. 중소기업관련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 개최
6. 테크노파크 관련 사업
  - 가. 연구 개발
  - 나. 교육 훈련
  - 다. 정보교류
  - 라. 창업 보육
  - 마. 행정 지원
  - 바. 시험생산
7. 중소기업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의 과제도출 및 운영

제5조(소재지) 본 센터는 수원대학교내에 둔다.

제6조(규정의 변경 등) 본 센터는 규정의 변경 및 해산 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7조(조직) 본 센터는 제3조와 제4조의 직무와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센터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직을 두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연구부 : 전기, 전자, 전산,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연구
2. 제2연구부 : 기계 및 산업공학 분야에 관한 연구
3. 제3연구부 : 환경, 건축, 토목, 도시공학 분야에 관한 연구
4. 제4연구부 : 생명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
5. 제5연구부 : 화학, 화공, 고분자 분야에 관한 연구
6. 제6연구부 : 산업디자인 분야에 관한 연구
7. 제7연구부 : 경영, 회계, 법률 분야에 관한 연구
8. 사무국 : 센터의 각종 출판물 제작, 자료 수집, 회계관리

제8조(임원) ① 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연구부장 : 7명
  3. 사무국장 : 1명
  4. 직원 : 1명
  5. 운영위원 : 약간명
- ②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기타인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본 센터의 연구원의 구분, 자격, 임기, 보수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연구처장, 공과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생활과학대학장, 미술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계획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장 재정 및 예·결산

제14조(재정) ①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경비로 충당한다.

1. 산학연 컨소시엄 및 테크노파크 사업의 일반관리비 및 기초사업비
2. 중소기업 기술용역 수입금
3. 본교의 운영지원비
4.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② 전항의 제1호의 비용은 정부 및 지자체의 고시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 본 센터의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7월 1일 부터 익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련 관청(중앙정부부서 및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연구비 등) ① 센터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기타 모든 수익금은 센터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예산내용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 소장은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의 경우 센터명의로 독립된 통장관리를 하고 지자체의 운영 및 회계감독을 받는다.

제19조(해산후 재산귀속) 본 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 권리, 의무는 수원대학교에 귀속된다.

## 제5장 보 칙

제20조(운영세칙)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21조(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사업에 따라 중앙 정부부서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고시 및 규정, 또는 유권해석에 따른다.

## 부 칙

이 제정규정은 199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